|  |  |  |
| --- | --- | --- |
| **<수출화물 노무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 12호  수출화물 노무세수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수출화물 노무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24호, 이하 "<관리방법>"으로 통칭)의 관련 조, 항을 세분화하고 개선한 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출퇴(면)세 자격인정  (1)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수출퇴(면)세 자격인정을 신청 처리하는 경우,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자료 제공 이외에도 <수출퇴(면)세 자격인정 신청표>의 전산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퇴(면)세 방법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익월부터 변경된 퇴(면)세 방법에 따라 신고한다. 기업은 변경 비준 전에 해당하는 수출화물은 변경 전의 퇴(면)세 방법에 따라 퇴(면)세를 신고해야 하며, 변경 후 변경 전 수출화물 퇴(면)세를 신고해서는 안 된다.  기존대로 면퇴세 방법을 적용한 기업은 변경 비준한 익월의 증치세 납세신고 기한 내 수출재고 장부에 기입한 면퇴세 미신고한 수출화물을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수출을 내수로 전환 증빙>문건을 작성한다.  기존대로 면저퇴세 방법을 적용한 기업은 변경 비준한 당월의 <면저퇴세 신고 집계표> 가운데 "당기 퇴세 과세액"을 변경 비준한 익월의 <증치세 납세 신고표>의 "면, 저, 퇴 과세 퇴세액"란에 기입해야 한다.  기업이 변경 전 퇴(면)세 방법에 따라 기신고 하였지만 변경 비준 전 처리심사를 거치지 않은 퇴(면)세는 주관세무기관이 기존의 퇴(면)세 방법에 따라 단독으로 심사 및 처리 비준한다. 기존 면저퇴세 방법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은 면저퇴세 방법에 따라 기신고한 퇴(면)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모두 심사를 통과한 후 퇴(면)세를 일차성 심사를 해야 한다.  퇴(면)세 방법이 면저퇴세에서 면퇴세로 변경된 경우, 변경 비준 전 이미 승인을 받은 증치세 전용발표 또는 취득한 세관의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는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면퇴세를 신고한 원시 증빙으로 간주할 수 없다.  (3) 수출기업이 수출퇴(면)세 인정자격을 말소 신청하였지만 세무등기 말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관리방법>의 제 3조 제(5)항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수출퇴(면)세 신고  (1)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수출퇴세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화물 노무퇴(면)세, 면세 신고업무 및 유관 증명문건 신청업무를 해야 한다. <관리방법> 및 본 공고에서는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제출하는 전산데이터는 모두 수출퇴세 신고시스템을 통해 생성되고 제출될 것을 요구한다. 수출퇴세 신고시스템에서 정보의 생성, 제출기능이 업그레이드가 완료되기 전에 임시로 종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수출퇴세 신고시스템은 국가세무총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거나 주관세무기관으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2)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우선 세무기관이 제공하는 원격 예비심사 서비스를 통해 퇴(면)세의 예비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입력 오류를 삭제한 후 정식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원격 예비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주관세무기관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퇴(면)세 증빙문건 전산정보가 완비되지 않는 수출화물노무는 정식으로 퇴(면)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지만 퇴(면)세는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 심사를 통과한 후에 처리할 수 있다.  (3)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상의 신고일자와 수출일자 기간에 세관이 상품코드를 조정하여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상의 상품코드가 조정 후의 상품코드와 불일치 하는 경우,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상에 기재된 상품코드에 따라 퇴(면)세를 신고해야 하며, <세관수출상품의 코드, 명칭, 퇴세율 조정 상응표>(첨부 1) 및 전산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4)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정식으로 퇴(면)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제공하는 원시증빙문건은 명세신고표에 기재된 신고순서에 따라 제본하여 책으로 만들어야 한다.  (5) 2013년 5월 1일 이후 신고된 수출화물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상의 수출일자 기준) 은 아래 관(款) 규정 이외에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수출퇴(면)세를 신고 시 제공한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상의 제 1 계량단위, 제 2 계량단위 및 수출기업이 신고한 계량단위가 최소 1개의 증치세 전용계산서 상의 계량단위와 일치해야 한다. 또한, 상술한 수출화물 신고서, 증치세 전용계산서상의 상품명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하는 경우 수출퇴(면)세를 신고할 수 없다.  동일한 화물에 속하는 다양한 종류의 부속품은 통합시켜 동일한 상품명칭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업은 수출화물 신고서, 증치세 전용계산서상에 상품명칭이 동일 하지 않은 연관성 및 동일하지 않은 계량단위의 환산표준을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해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6) 수탁인이 많은 기업들을 대리하여 수출화물을 모아 한 번에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위탁인이 해당 수출화물 신고서의 사본을 제공하여 수출퇴(면)세를 신고할 수 있다.  (7)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수출하여 회계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화물은 반드시 판매한 익월에 증치세 납세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생산기업은 면저퇴세 유관 신고 및 소비세 면세 신고(소비세 과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를 처리해야 한다. <관리방법> 제4조 제(1)항의 제1관 및 제5조 제(1)항의 제1관이 상충되는 경우 시행을 중지한다.  <관리방법>제4조 제(1)항의 제2관 및 제5조 제(1)항의 제2관 가운데 "기한초과"는 다음 해 4월 30일을 초과하기 전 마지막 증치세 납세신고기한까지를 가리킨다.  (8) 증치세 일반납세인에 속하는 집적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애니메이션 설계기업 및 기타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의 수출이 증치세 퇴(면)세 정책에 부합되는 화물인 경우, 면저퇴세 방법을 시행하며, <관리방법> 제4조 및 본 공고의 유관 규정에 따라 수출퇴(면)세를 신고한다.  (9) 생산기업이 면저퇴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생산기업 수출화물의 면, 저, 퇴세 신고명세표>의 FOB조건이 수출화물 신고서 상의 FOB와 불일치 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출화물 FOB 차이 원인 설명표>(첨부 2) 및 전산데이터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10) 진료가공업에 종사하는 생산기업은 2013년 7월 1일부터 아래 규정에 따라 진료가공 수출화물의 퇴(면)세의 신고 및 수(장)책 핵소업무를 처리한다. <관리방법> 제4조 제(3)항은 시행을 중지한다. 2013년 7월 1일 이전에, 기업이 이미 주관세무기관의 등기 처리수속을 거친 진료가공 수(장)책은 기존 방법에 따라 면저퇴세신고, 수입원료신고, 수(장)책 핵소(전자장부 핵소는 세관이 1개의 주기에 핵소수속을 마무리한 후의 핵소를 가리킴)를 처리한다.  ① 진료가공 계획분배율의 확정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15일 까지 이미 세무기관에서 진료가공 수(장)책 핵소를 처리한 기업은 2913년도 진료가공업무의 계획분배율은 해당 기간에 세무기관이 기핵소한 모든 수(장)책의 가중평균의 실제분배율이다. 주관세무기관은 2013년 7월 1일 이전에 계산하여 기업과 2013년도 진료가공업무의 계획분배율을 확정해야 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15일까지 세무기관에 진료가공업무 수(장)책 핵소를 미처리한 기업은 당해 년도 진료가공 업무의 계획분배율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처음 진료가공 수(장)책의 계획분배율이 된다. 기업은 처음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진료가공 수(장)책의 진료가공 수출화물에 대한 면저퇴세를 신고하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진료가공 기업계획분배율 비안표>(첨부 3) 및 관련 전산데이터를 발송해야 한다.  ② 진료가공 수출화물의 면저퇴세 신고  진료가공 수출화물에 대해 기업은 수출화물의 인민폐 FOB조건에서 수출화물 비용을 공제한 보세수입 원료금액의 잔액을 증치세 퇴(면)세의 과세기준으로 해야 한다. <관리방법> 제4조의 유관 규정에 따라 면저퇴세의 유관 신고를 한다.  진료가공 수출화물비용의 보세수입 원료금액 = 진료가공 수출화물 인민폐 FOB \* 진료가공 계획분배율  계산시 세액 징수면제 및 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당기 모든 수출화물의 FOB에 따라 당기 모든 진료가공 수출화물비용을 공제한 보세수입 원료금액 잔액에 징수 퇴세율의 차액을 곱하여 계산해야 한다. 진료가공 수출화물의 유관 증빙문건을 모두 구비하여 면저퇴세를 신고하는 경우, 완비한 증빙문건의 진료가공 수출화물 인민폐 FOB에서 그 비용을 공제한 보세수입 원료금액 잔액에서 면저퇴세액을 계산한다.  ③ 연간 진료가공업무의 핵소  2014년부터 기업은 본 년도 4월 20일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생산기업 진료가공업무 면저퇴세 핵소신고표>(첨부 4) 및 전산데이터를 발송해야 하며, 전년도 세관이 기핵소처리 한 진료가공 수(장)책의 진료가공업무 핵소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기업이 핵소 신청한 후에, 주관세무기관은 전년도 진료가공 수출화물에 대한 면저퇴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4월 20일 이후에도 핵소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수출 퇴(면)세 업무는 주관세무기관이 일시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핵소신청 한 후에 처리할 수 있다.  주관세무기관은 핵소신청을 수리한 후, 수출퇴세 심사시스템을 통해 세관네트워크가 감독 관리하는 가공무역 전자데이터 가운데 진료가공 "전자장책(전자화 수책) 핵소데이터" 및 진료가공업무의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계산하고, <진료가공 수(장)책 실제 분배율 반환표>(첨부 5)를 만들어 기업에게 전달하고 확인해야 한다.  기업은 진료가공 수(장)책의 실제 발생한 수출입 현황에 따라 반환표의 수(장)책 실제분배율에 대한 대조심사를 적절히 진행해야 한다. 대조심사를 거쳐 기업은 해당 수(장)책에 대해 확인을 진행하고, 대조심사 결과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 기업은 해당 수(장)책의 실제 수출입 현황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대조심사가 완료된 이후 기업은 <진료가공 수(장)책의 실제분배율 반환표>에 확인의견 및 보충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공장 날인 후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부합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수(장)책에 대하여 세관네트워크가 감독 관리하는 가공무역 전자데이터의 해당 수(장)책의 진료가공 "전자장책(전자화 수책) 핵소데이터" 및 수출입화물 세관신고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기업에게 반환해야 한다. 반환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거나 종이 세관신고서 상의 데이터와 불일치 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은 적시에 세관에 조사를 신청해야 하며, 해당 수(장)책의 실제 발생된 수출입 현황에 따라 오류 또는 불일치하는 데이터를 <기 핵소 수(장)책 세관데이터 조정 보고표(수입세관신고서 / 수출세관신고서)>(첨부 6-1, 첨부 6-2)에 작성하여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데이터, 유관 세관신고서 원본을 송부해야 하고, 세관에 조사현황에 대한 서면설명서를 송부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보내온 <기 핵소 수(장)책 세관데이터 조정 보고표>의 전자데이터를 수출퇴세 심사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시 계산하여 <진료가공 수(장)책 실제분배율 반환표>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수(장)책의 실제분배율에 대해 확인을 한 이후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확인한 실제분배율에 따라 진료가공업무에 대하여 핵소를 진행하고, <생산기업 진료가공업무의 면저퇴세 핵소표>(첨부 7)을 기업에게 보내준다. 기업은 익월 해당 표에 근거하여 전기 면저퇴세액을 조정하고 세액 징수면제 및 공제를 할 수 없다.  주관세무기관이 연간 핵소를 완료한 후, 기업은 <생산기업 진료가공업무 면저퇴세 핵소표>에 기재된 "전년도 기 핵속 수(장)책 종합 실제분배율"을 당해 년도 진료가공 계획분배율로 삼는다.  ④ 기업이 퇴(면)세 방법을 말소 또는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퇴(면)세 방법을 말소 또는 변경신청을 하기 전에 상술한 방법에 따라 진료가공업무의 핵소를 진행해야 한다.  (1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수출화물 노무 증치세 및 소비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39호) 제19조 제(4)항에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기업은 교통운수수단 및 기계설비 수출 계약체결 후 <선 퇴세 후 핵소자격 신청표>(첨부 8) 및 전자데이터를 송부하고,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동의를 얻은 후 아래 규정에 따라 수출 면저퇴세를 신고 및 핵소처리 해야 한다.  ① 기업은 교통운수수단 또는 기계설비가 회계상 매출로 인식된 시점 이후 기타 수출화물 노무를 병합하여 주관세무기관에 면저퇴세를 처리하여 신고(<생산기업의 수출화물 면, 저, 퇴세 신고 명세표>의 "수출회수 핵소단 번호"란에 수출계약번호를 기입하고, "업무유형"란에 “XTHH”를 기입해야 함.）해야 하며 아래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ㄱ. 수출계약서(사본, 제1차 신고시에만 제공)  ㄴ. 기업재무회계제도(사본, 제1차 신고시에만 제공)  ㄷ. 수출판매명세표(사본)  ㄹ. <선 퇴세 후 핵소기업의 면저퇴세 부속 신고표>(첨부 9) 및 전자데이터  ㅁ. 연간 재무재표(연도결산 후 4월 30일전까지 송부)  ㅂ. 대금수취 증빙문건(사본, 선급금 취득한 것 제공)  ㅅ. 주관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자료  ② 교통수단 또는 기계설비를 세관신고 및 수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업은 증치세 납세신고기간에 <관리방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유관 증빙문건을 완비하여 면저퇴세를 신고하고, 기 퇴(면)세된 핵소를 처리한다.  (12) 면저퇴세를 기신고한 수출화물이 반송되어 세금 면세 또는 징수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술한 상황이 발생한 익월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기존의 면저퇴세 신고데이터를 상쇄시킨다. 또한 현행 회계제도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 조정을 진행한다. <관리방법> 제4조 제(5)항이 상충되는 경우 시행을 중지한다.  (13) 면세품 경영기업은 <기업법인 영업집조> 에 규정된 경영화물 범위에 따라 <면세품 경영기업 판매화물의 퇴세 비안표>(첨부 10)를 작성하고 전산데이터를 만들어 주관세무기관에 비안한다. 기업 경영범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변화가 발생한 날 이후 처음 증치세 납세신고하는 기한 내에 보충신고를 해야 한다.  (14) 대외 외주공정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수출화물은 수출기업이 퇴(면)세를 신청한다. 수출기업이 외주기업에 속하는 경우 퇴(면)세 신청시 반드시 외주계약서(협의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본 항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리방법> 제6조 제2관 제(2)항이 상충되는 경우 시행을 중지한다.  (15) 상해 석유천연가스 채굴기업에게 자가 생산한 해양공정 구조물을 판매하고, 생산기업이 수출 퇴(면)세를 신고할 때에 <생산기업의 수출화물 면, 저, 퇴세 신고명세표>의 "비고란"에 구매기업의 납세인 식별번호와 구매기업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16) 선박 수리 및 수선에 대한 퇴(면)세를 신고하는 경우 수리 및 수선 업무가운데 부속품, 원자재를 사용한 무역방식, 즉 "일반무역"의 수출화물 세관신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에 "표기번호 및 비고"란에 수리하거나 수리를 받는 선박명칭을 기재하는 경우 수리 받는 선박을 수출화물로 간주한다.  (17) 국외(지역)기업 항공기(선박)에 항로유지보수(항로 수리)의 화물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수출기업(유지보수 기업)은 퇴(면)세 신고 시 국외(지역)기업명칭, 항공편 번호(선박명칭)를 <생산기업의 수출화물 면, 저, 퇴세 신고명세표>의 제22란 "비고"에 기재하고, 아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① 유지보수 받는 국외(지역)기업과 체결한 유지보수 계악서  ② 수출인보이스  ③ 국외(지역)기업의 항공기 기장 또는 외국 선박선장이 서명하여 확인한 유지보수 증빙서류[반드시 국외(지역)기업명칭 및 항공편 번호(선박명칭)을 명기해야 함]  (18)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에서 발생하는 실제 수출화물노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원인으로 인해 규정된 기한 내에 유관 문건을 완비하지 못해 수출퇴(면)세 신고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퇴(면)세 신고기한 마감일 이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신청하고, 유관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쳐 성급 국가세무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비로서 수출퇴(면)세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본 항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상술한 사항과 동일한 수출화물노무가 발생한 경우, 수출기업은 2013년 6월 30일 이전에 본 항 규정에 따라 퇴(면)세 신고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더 이상 상술한 종류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① 자연재해, 사회적 돌발사건 등 불가항력적 요인  ② 수출퇴(면)세 신고증빙의 도난, 박탈 또는 우편 유실 및 송달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③ 유관 사법,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검사로 인해 수출퇴(면)세 신고증빙을 압류당한 경우  ④ 매매쌍방간 경제적 분쟁으로 인해 수출퇴(면)세 이신고 증빙을 적시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⑤ 기업 세무처리 담당인원의 사망, 갑작스런 심각한 중병, 임의 사직으로 인해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기한 내에 수출퇴(면)세 신고증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⑥ 기업이 세관에 수출화물통관문건 수정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퇴(면)세 기한 만료일까지 세관이 수정처리를 완료하지 않아, 기한 내에 수출화물통관문건을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⑦ 국가세무총국이 정한 기타 상황  3. 면세정책을 적용하는 수출화물노무 신고  (1) <관리방법> 제11조 제(7)항 중 "규정된 납세신고 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신고 납세하지 않은 것"은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통관수출일 익월부터 다음해 5월 31일 이전까지 각 증치세 신고납세기한 내에 <면세 수출화물노무 명세표>(첨부문건 11)를 작성하고 정식 신고 전자데이터를 제출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면세신고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관리방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 신고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아래 증빙을 <면세 수출화물노무 명세표>에 기재한 신고순서에 따라 바인딩하고, 회사에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① 수출화물통관문건(수출퇴세페이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페이지로 대체 가능)  ② 수출 인보이스  ③ 위탁수출 화물인 경우, 수탁측 주관 세무기관이 발급한 대리수출화물 증명도 제공  ④ 매입화물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매입화물 증빙도 제공해야 함. 합법적이고 유효한 매입증빙에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 보통 세금계산서, 기타 보통 세금계산서, 세관 수출증치세 전용 납부문건, 농산품 구매 세금계산서, 정부 비(非)세수 계산서가 해당한다.  ⑤ 여행 화물구매 방식으로 통관하는 수출 화물과 관련해서는 상술한 2,4번의 증빙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신고한 수출화물면세판매액과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상의 FOB 가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위탁가공수출화물제외), <면세수출화물노무명세표>, <수출화물 FOB차이 원인설명서> 및 전자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4）주관세무기관이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면세신고를 수리하였어도, 면세신고 기한 이후 심사결과 규정을 따르지 않은 수출화물이 발견될 경우, 면세조건에 부합한 기업은 주관세무기관에 익월 면세신고가 가능하다.  （5） 내료가공 위탁가공업무를 취급하는 수출기업은 세관이 위탁가공 핵소종결통지서를 발급한 일로부터 익월 증치세 신고기한까지 수출화물세관신고서의 비수출환세전용 원본 또는 복사본을 제출하고, <관리방법>제 9조 제4항 제2목 제(2)규정에 따라 위탁가공 수출화물면세 핵소((核銷)수속을 밟아야 한다. 규정대로 위탁가공 수출화물 면세핵소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주관세무기관의 면세핵소처리 심사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위탁가공 가공비 증치세를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한다.  （6）수출기업 혹은 기타단위는 <관리방법> 제11조 제8항 규정에 따라 면세를 포기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에<수출화물노무포기면세권성명표>(첨부12)를 제출하여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접수 후 익월부터 징세정책이 실현되며, 36개월 이내에 변경이 불가하다.  4. 관련 서류증명 처리  위탁수출화물이 반송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수출화물반송 추징(미환급)증명>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화물반송 추징(미환급)증명>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관리방법> 제 10조 제 (3)항과 내용상 모순이 존재할 경우 진행을 중지해야 한다.  5. 기타 보충규정  (1) <관리방법>제 11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그룹회사의 본사는 수출세금환급 자격인증신청 시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그룹회사 구성원 기업인증신청표>(첨부13) 및 전자보고데이터   ② 그룹회사 본사 및 지주생산기업의 영업집조 복사본  ③그룹회사 본사 및 지주생산기업의 <수출세금환급자격인증표> 복사본  ④그룹회사 본사 및 지주생산 기업의 당헌복사본  ⑤주관세무기관요구의 기타 자료  (2) 대외무역기업이 2012년 7월 1일 이후 회수한 가공화물은 2013년 6월 30일 전에 수출하고,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한 위탁가공업무 계약은 2012년 6월 30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환급을 신청한다. 대외무역기업은 2013년 4월 30일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상술의 계약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3) 화물무역외환관리제도의 개혁 적응을 위하여 <관리방법> 중 수출대금핵소단과 연관된 규정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다.  2012년 8월 1일 이후 세관신고된 수출 화물 및 2012년 7월 31일 수출대금핵소 기한이 되지 않았거나 수출대금핵소 기한이 되었지만 2012년 8월 1일 이전 수출화물의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수출세금환급 신청 시 <관리방법> 첨부 중 수출대금핵소단과 관련된 보고 항목은 작성하지 않는다.  (4) 세무기관에서 수출환급부분에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한 경우, 수출기업 또는 단위는 주관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터뷰에 응해야 하며, 서면으로 된 상황설명보고와 <생산기업 수출업무 체크리스트> (첨부 14) 혹은 <대외무역기업 수출업무 체크리스트>(첨부 15) 및 전자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화물의 공급업체의 주관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공급화물의 신뢰성과 납세상황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급업체는 <공급화물기업 체크리스트>(첨부16)을 작성하여 조건을 갖추고, 주관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전자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주관세무기관에서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수출업무에서 아래에 열거한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수출업무는 임시적으로 수출퇴(면)세 처리가 불가능 하다. 이미 처리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관련 세금환급액에 따라 해당 기업의 기타 심의 통과된 세금환급금에 대한 수출퇴(면)세 처리를 유예하여야 한다. 기타 세금환급금이 존재하지 않거나 환급금액이 적을 경우, 수출기업은 차액부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에서 조사에 의해 관련 의문점이 해소되면 수출퇴(면)세 를 처리하거나 담보를 없앨 수 있다.  ① 수출퇴(면)세 을 갈취한 혐의로 세무기관 감사부문이 조사처리 한 미결안.  ② 수출밀수혐의로 세관에서 조사처리 한 미결안  ③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수출 영수증, 선하증권 등 수출서류의 상품 명칭, 수량, 금액 등 내용과 수입국가(지역)의 수입세관신고서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④ 세금환급률이 낮은 수출화물을 높게 올려 세관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⑤ 수출화물의 공급업체가 증치세전용 영수증 등의 허위발급 혐의가 존재하여 기타 화물의 신뢰성 및 납세상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6）주관세무기관이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구입한 수출 화물노무가 재세[2012]39호 문서 제 7조 제(1)항 제 4목, 제5목과 제7목의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화물노무를 수출한 수출화물세관신고서상에 기재된 기타 화물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은 세금탈세 의혹이 풀린 후에 환급처리를 할 수 있다.  （7）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비정상적으로 등록된 회사에 포함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해당 기업에 일시적으로 수출퇴(면)세 처리 진행이 불가하다.  （8）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아직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서류의 수출화물(수출화물의 거래방식특성으로 기업에 관련 서류가 없는 상황제외)은 환급9면세) 신청이 불가하며, 면세정책이 적용된다. 이미 환급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음수(负数)로 보고하여야 한다.  （9）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한 화물노무에 대해 주관세무기관이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재세[2012]39호 문서 제 7조 제(1)항 제4목과 제5목 규정에 의거하여 증치세 징수 정책을 적용한다. 조사결과 세금탈취에 속할 경우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  ① 제공한 증치세 전용 영수증, 세관수입증치세 전용 납세신고서 등 입하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일 경우  ② 제공한 증치세 전용 영수증의 공급업체 세무등기가 말소되었거나 비정상적으로 발급하였다고 여겨지는 경우  ③ 제공한 증치세 전용 영수증 공제내용과 공급업체기록장부상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④ 제공한 증치세 전용 영수증상에 기재된 화물노무와 공급업체가 실제 판매한 화물노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⑤ 제공한 증치세 전용 영수증상의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⑥ 제공한 증치세 전용 영수증상의 화물명칭, 수량과 공급기업의 적하명세서, 출고전표 및 관련 국내 운송 서류상의 관련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량은 합리적인 손익에 속하므로 제외됨)  ⑦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상의 수출일자가 입하증서상에 열거된 화물의 출하시간 혹은 생산기업 자체화물의 출하시간보다 빠를 경우  ⑧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상에 기재된 수출화물과 입하증서상이 기재된 화물 혹은 생산기업의 자체 화물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⑨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상의 상품명칭, 수량, 중량과 수출운송증권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량, 중량은 합리적 손익에 속하므로 제외됨)  ⑩ 자체 생산 화물을 수출한 생산기업이 그 생산 설비와 작업도구로 해당 화물을 제조해내지 못하는 경우  ⑪ 자체 생산 화물을 판매한 공급기업이 그 생산설비, 작업도구로 해당 화물을 제조해내지 못하는 경우  ⑫ 공급기업이 판매한 외부구입 화물의 구매업무가 허위업무일 경우  ⑬ 공급기업이 판매한 위탁가공 회수화물의 위탁가공업무가 허위업무일 경우  ⑭ 수출화물의 선하증권 혹은 송장등의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일 경우  ⑮ 수출화물 세관신고서는 세관중개인 등 단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출한 화물을 기업이 수출한 화물로 위조한 경우  （10）국경소액무역방식으로 외국기업, 외국인을 대리하여 세관 신고한 수출 화물(국가가 취소한 수출퇴(면)세 화물 제외)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된 상술 화물은 더 이상 증치세와 소비세의 납세, 면세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  ① 국경지역수출기업은 반드시 화물수출 전에 아래에 열거한 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제공하여 등기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ㄱ. 기업관련 인원서명, 단위의 관인이 찍은 <변경소액무역방식으로 외국기업, 외국인을 대리하여 세관 신고한 수출화물등기표>(첨부 17) 및 전자데이터  ㄴ. 대리수출 협의 원본 및 복사본. 대리수출 협의 이외의 문서, 필요 시 중문 번역본 제공  ㄷ. 위탁자 수탁자 여권 혹은 외국 변경지역 거주민의 변민증(边民证) 원본과 복사본  ② 국경지역 수출기업은 화물의 세관신고 수출일 (수출화물의 세관신고상의 수출일자 기준) 익월부터 다음해 4월 30일 전의 증치세납부 신청 기한 내에 아래에 열거한 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대리세관신고 핵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ㄱ. 기업관련 인원서명, 단위의 관인이 찍힌 <변경소액무역방식 외국기업, 외국인 대리세관신고 수출화물 핵소표>(첨부18) 기입 및 전자데이터  ㄴ.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수출퇴(면)세 세전용, 런민비 결산의 세관검자표시가 찍힌 기타 련차(联次))  ③ 국경지역 수출기업이 대리세관신고 하여 수출한 화물은 국가에 귀속되어 수출퇴(면)세가 취소되며 유관규정에 따라 증치세, 소비세 징수정책을 적용한다.  ④ 국경지역 수출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본 공고 집행일 내에 외국기업, 외국인을 대리하여 세관 신고한 수출 화물(수출화물 세관신고서상의 수출일자 기준)은 반드시 2013년 4월 30일 이전의 증치세 납부 신청 기한 내에 본 항 제2목에서 열거한 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제공하여 핵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⑤ 국경지역 수출기업이 본항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대리 세관신고 등록 및 핵소는 주관세무기관에서 대리세관신고관리에 의해 자격 취소가 가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제 62조 등 유관구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1）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 수출 재세[2012]39호 문서 제 9조 제(2)항 제 6목에서 열거한 화물, 수출화물이 두 종류 및 두 종류 이상의 원자재는 재세[2012]39호 문서 첨부 9에서 열거한 원자재로, 주요 원자재의 적용 정책에 의하여 실시된다. 주요원자재는 수출화물 원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원자재를 의미한다.  （12）특수지역내의 생산기업이 임대, 공장건물양도에 사용한 수도∙전기세는 환급신고를 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은 반드시 전입원가로 처리해야 한다.  （13）수출기업 또는 단위는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 선택 수출퇴(면)세 업무 알림 정보신청표 >(첨부 19)을 기입하여 주관세무기관에 무료 수출퇴(면)세 업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미 수출퇴세 신고시스템을 신청하였을 경우, 기업 책임자, 연락전화번호, 우편번호 등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반드시 주관세무기관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는 국가가 제정 발효한 수출퇴(면)세 관련 정책과 관리규정에 따라 수출퇴(면)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에서 제공한 수출환급업무 알림 서비스는 수출기업과 기타 단위에서 참고만 할 수 있으며 수출퇴(면)세 의 증서로 사용될 수는 없다.  （14）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는 매년 11월 15일에서 30일안에 금년도 실제 수출상황 및 차년수출계획상황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수출기업예상수출상황보고표>(첨부 20)와 전자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15）<관리방법> 및 본 공고상의 요구와 동시에 제공한 원본과 복사본 자료, 수출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제공한 복사본상에는 반드시 ‘원본과 상동’이라는 글자 및 기업의 관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복사본과 원본을 대조한 후 원본은 반송하고 복사본은 보관해두어야 한다.  6. 본 공고에서 집행시간의 규정을 명확히 명시한 것을 제외한 기타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실시되며 <폐지문건목록>(첨부 22)에서 열거한 문서 약관도 동시에 폐기됨을 특별히 공고하는 바이다.  첨부:  1. 세관수출상품코드, 명칭, 세금환급률조정대응표  2. 수출화물 FOB 차이 원인 설명표  3. 진료가공 기업계획분배율 비안표  4. 생산기업 진료가공업무 면저퇴세 핵소신고표  5. 진료가공 수(장)책 실제 분배율 반환표  6-1. 기 핵소 수(장)책 세관데이터 조정 보고표(수입세관신고서)  6-2. 기 핵소 수(장)책 세관데이터 조정 보고표(수출세관신고서  7. 생산기업 진료가공업무의 면저퇴세 핵소표  8. 선 퇴세 후 핵소자격 신청표  9. 선 퇴세 후 핵소기업의 면저퇴세 부속 신고표  10. 면세품 경영기업 판매화물의 퇴세 비안표  11. 면세수출화물노무명세표  12. 수출화물노무포기면세권성명표  13. 그룹회사성원기업인증신청표  14. 생산기업 수출업무 체크리스트  15. 대외무역기업 수출업무 체크리스트  16. 공급화물기업 체크리스트  17. 변경소액무역방식으로 외국기업, 외국인을 대리하여 세관 신고한 수출화물등기표  18. 변경소액무역방식 외국기업, 외국인 대리세관신고 수출화물 핵소표  19.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 선택 수출퇴(면)세 업무 알림 정보신청표  20. 수출기업예상수출상황보고표  21. 세금환급화물 및 표기대조표  22. 폐지문건수록  　국가세무총국  　　2013년3월13일  문서다운로드：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254350.files/n12254658.rar> |  | **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12号  为准确执行出口货物劳务税收政策，进一步规范管理，国家税务总局细化、完善了《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24号，以下简称《管理办法》）有关条款，现公告如下：  　　一、出口退（免）税资格认定  　　（一）出口企业或其他单位申请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时，除提供《管理办法》规定的资料外，还应提供《出口退（免）税资格认定申请表》电子数据。  　　（二）出口企业或其他单位申请变更退（免）税办法的，经主管税务机关批准变更的次月起按照变更后的退（免）税办法申报退（免）税。企业应将批准变更前全部出口货物按变更前退（免）税办法申报退（免）税，变更后不得申报变更前出口货物退（免）税。  　　原执行免退税办法的企业，在批准变更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可将原计入出口库存账的且未申报免退税的出口货物向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出口转内销证明》。  　　原执行免抵退税办法的企业，应将批准变更当月的《免抵退税申报汇总表》中“当期应退税额”填报在批准变更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表》“免、抵、退应退税额”栏中。  　　企业按照变更前退（免）税办法已申报但在批准变更前未审核办理的退（免）税，主管税务机关对其按照原退（免）税办法单独审核、审批办理。对原执行免抵退税办法的企业，主管税务机关对已按免抵退税办法申报的退（免）税应全部按规定审核通过后，一次性审批办理退（免）税。  　　退（免）税办法由免抵退税变更为免退税的，批准变更前已通过认证的增值税专用发票或取得的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出口企业或其他单位不得作为申报免退税的原始凭证。  （三）出口企业申请注销出口退（免）税认定资格但不需要注销税务登记的，按《管理办法》第三条第（五）项相关规定办理。  　　二、出口退（免）税申报  　　（一）出口企业或其他单位应使用出口退税申报系统办理出口货物劳务退（免）税、免税申报业务及申请开具相关证明业务。《管理办法》及本公告中要求出口企业或其他单位报送的电子数据应均通过出口退税申报系统生成、报送。在出口退税申报系统信息生成、报送功能升级完成前，涉及需报送的电子数据，可暂报送纸质资料。  　　出口退税申报系统可从国家税务总局网站免费下载或由主管税务机关免费提供。  　　（二）出口企业或其他单位应先通过税务机关提供的远程预申报服务进行退（免）税预申报，在排除录入错误后，方可进行正式申报。税务机关不能提供远程预申报服务的，企业可到主管税务机关进行预申报。  　　出口企业或其他单位退（免）税凭证电子信息不齐的出口货物劳务，可进行正式退（免）税申报，但退（免）税需在税务机关按规定对电子信息审核通过后方能办理。  　　（三）在出口货物报关单上的申报日期和出口日期期间，若海关调整商品代码，导致出口货物报关单上的商品代码与调整后的商品代码不一致的，出口企业或其他单位应按照出口货物报关单上列明的商品代码申报退（免）税，并同时报送《海关出口商品代码、名称、退税率调整对应表》（附件1）及电子数据。  　　（四）出口企业或其他单位进行正式退（免）税申报时须提供的原始凭证，应按明细申报表载明的申报顺序装订成册。  　　（五）2013年5月1日以后报关出口的货物（以出口货物报关单上的出口日期为准），除下款规定以外，出口企业或其他单位申报出口退（免）税提供的出口货物报关单上的第一计量单位、第二计量单位，及出口企业申报的计量单位，至少有一个应同与其匹配的增值税专用发票上的计量单位相符，且上述出口货物报关单、增值税专用发票上的商品名称须相符，否则不得申报出口退（免）税。  　　如属同一货物的多种零部件需要合并报关为同一商品名称的，企业应将出口货物报关单、增值税专用发票上不同商品名称的相关性及不同计量单位的折算标准向主管税务机关书面报告，经主管税务机关确认后，可申报退（免）税。  　　（六）受托方将代理多家企业出口的货物集中一笔报关出口的,委托方可提供该出口货物报关单的复印件申报出口退（免）税。  　　（七）出口企业或其他单位出口并按会计规定做销售的货物，须在做销售的次月进行增值税纳税申报。生产企业还需办理免抵退税相关申报及消费税免税申报（属于消费税应税货物的）。《管理办法》第四条第（一）项第一款和第五条第（一）项第一款与此冲突的规定，停止执行。  　　《管理办法》第四条第（一）项第二款和第五条第（一）项第二款中的“逾期”是指超过次年4月30日前最后一个增值税纳税申报期截止之日。  　　（八）属于增值税一般纳税人的集成电路设计、软件设计、动漫设计企业及其他高新技术企业出口适用增值税退（免）税政策的货物，实行免抵退税办法，按《管理办法》第四条及本公告有关规定申报出口退（免）税。  　　（九）生产企业申报免抵退税时，若报送的《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申报明细表》中的离岸价与相应出口货物报关单上的离岸价不一致的，应按主管税务机关的要求填报《出口货物离岸价差异原因说明表》（附件2）及电子数据。  　　（十）从事进料加工业务的生产企业，自2013年7月1日起，按下列规定办理进料加工出口货物退（免）税的申报及手（账）册核销业务。《管理办法》第四条第（三）项停止执行。2013年7月1日以前，企业已经在主管税务机关办理登记手续的进料加工手（账）册，按原办法办理免抵退税申报、进口料件申报、手（账）册核销（电子账册核销指海关办结一个周期核销手续后的核销）。  　　1.进料加工计划分配率的确定  　　2012年1月1日至2013年6月15日已在税务机关办理过进料加工手（账）册核销的企业，2013年度进料加工业务的计划分配率为该期间税务机关已核销的全部手（账）册的加权平均实际分配率。主管税务机关应在2013年7月1日以前，计算并与企业确认2013年度进料加工业务的计划分配率。  　　2012年1月1日至2013年6月15日未在税务机关办理进料加工业务手（账）册核销的企业，当年进料加工业务的计划分配率为2013年7月1日后首份进料加工手（账）册的计划分配率。企业应在首次申报2013年7月1日以后进料加工手（账）册的进料加工出口货物免抵退税前，向主管税务机关报送《进料加工企业计划分配率备案表》（附件3）及其电子数据。  　　2.进料加工出口货物的免抵退税申报  　　对进料加工出口货物，企业应以出口货物人民币离岸价扣除出口货物耗用的保税进口料件金额的余额为增值税退（免）税的计税依据。按《管理办法》第四条的有关规定，办理免抵退税相关申报。  　　进料加工出口货物耗用的保税进口料件金额=进料加工出口货物人民币离岸价×进料加工计划分配率  　　计算不得免征和抵扣税额时，应按当期全部出口货物的离岸价扣除当期全部进料加工出口货物耗用的保税进口料件金额后的余额乘以征退税率之差计算。进料加工出口货物收齐有关凭证申报免抵退税时，以收齐凭证的进料加工出口货物人民币离岸价扣除其耗用的保税进口料件金额后的余额计算免抵退税额。  　　3.年度进料加工业务的核销  　　自2014年起，企业应在本年度4月20日前，向主管税务机关报送《生产企业进料加工业务免抵退税核销申报表》（附件4）及电子数据，申请办理上年度海关已核销的进料加工手（账）册项下的进料加工业务核销手续。企业申请核销后，主管税务机关不再受理其上一年度进料加工出口货物的免抵退税申报。4月20日之后仍未申请核销的，该企业的出口退（免）税业务，主管税务机关暂不办理，待其申请核销后，方可办理。  　　主管税务机关受理核销申请后，应通过出口退税审核系统提取海关联网监管加工贸易电子数据中的进料加工“电子账册（电子化手册）核销数据”以及进料加工业务的进、出口货物报关单数据，计算生成《进料加工手（账）册实际分配率反馈表》（附件5），交企业确认。  　　企业应及时根据进料加工手（账）册实际发生的进出口情况对反馈表中手（账）册实际分配率进行核对。经核对相符的，企业应对该手（账）册进行确认；核对不相符的，企业应提供该手（账）册的实际进出口情况。核对完成后，企业应在《进料加工手（账）册实际分配率反馈表》中填写确认意见及需要补充的内容，加盖公章后交主管税务机关。  　　主管税务机关对于企业未确认相符的手（账）册，应提取海关联网监管加工贸易电子数据中的该手（账）册的进料加工“电子账册（电子化手册）核销数据”以及进、出口货物报关单数据，反馈给企业。对反馈的数据缺失或与纸质报关单不一致的，企业应及时向报关海关申请查询，并根据该手（账）册实际发生的进出口情况将缺失或不一致的数据填写《已核销手（账）册海关数据调整报告表（进口报关单/出口报关单）》（附件6-1，附件6-2），报送至主管税务机关，同时附送电子数据、相关报关单原件、向报关海关查询情况的书面说明。  　　主管税务机关应将企业报送的《已核销手（账）册海关数据调整报告表》电子数据读入出口退税审核系统，重新计算生成《进料加工手（账）册实际分配率反馈表》。在企业对手（账）册的实际分配率确认后，主管税务机关按照企业确认的实际分配率对进料加工业务进行核销，并将《生产企业进料加工业务免抵退税核销表》（附件7）交企业。企业应在次月根据该表调整前期免抵退税额及不得免征和抵扣税额。  　　主管税务机关完成年度核销后，企业应以《生产企业进料加工业务免抵退税核销表》中的“上年度已核销手（账）册综合实际分配率”，作为当年度进料加工计划分配率。  　　4.企业申请注销或变更退（免）税办法的，应在申请注销或变更退（免）税办法前按照上述办法进行进料加工业务的核销。  　　（十一）符合《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政策的通知》（财税〔2012〕39号）第九条第（四）项规定的生产企业，应在交通运输工具和机器设备出口合同签订后，报送《先退税后核销资格申请表》（见附件8）及电子数据，经主管税务机关审核同意后，按照以下规定办理出口免抵退税申报、核销：  　　1.企业应在交通运输工具或机器设备自会计上做销售后，与其他出口货物劳务一并向主管税务机关办理免抵退税申报（在《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申报明细表》“出口收汇核销单号”栏中填写出口合同号，“业务类型”栏填写“XTHH”），并附送下列资料：  　　（1）出口合同（复印件，仅第一次申报时提供）；  　　（2）企业财务会计制度（复印件，仅第一次申报时提供）；  　　（3）出口销售明细账（复印件）；  　　（4）《先退税后核销企业免抵退税申报附表》（附件9）及其电子数据；  　　（5）年度财务报表（年度结束后至4月30日前报送）；  　　（6）收款凭证（复印件，取得预付款的提供）；  　　（7）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2.交通工具或机器设备报关出口之日起3个月内，企业应在增值税纳税申报期，按《管理办法》第四条规定收齐有关单证，申报免抵退税，办理已退（免）税的核销。  　　（十二）已申报免抵退税的出口货物发生退运，及需改为免税或征税的，应在上述情形发生的次月增值税纳税申报期内用负数申报冲减原免抵退税申报数据，并按现行会计制度的有关规定进行相应调整。《管理办法》第四条第（五）项与此冲突的规定停止执行。  　　（十三）免税品经营企业应根据《企业法人营业执照》规定的经营货物范围，填写《免税品经营企业销售货物退税备案表》（附件10）并生成电子数据，报主管税务机关备案。如企业的经营范围发生变化，应在变化之日后的首个增值税纳税申报期内进行补充填报。  　　（十四）用于对外承包工程项目的出口货物，由出口企业申请退（免）税。出口企业如属于分包单位的，申请退（免）税时，须补充提供分包合同（协议）。本项规定自2012年1月1日起开始执行。《管理办法》第六条第二款第（二）项与此冲突的规定，停止执行。  　　（十五）销售给海上石油天然气开采企业自产的海洋工程结构物，生产企业申报出口退（免）税时，应在《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申报明细表》的“备注栏”中填写购货企业的纳税人识别号和购货企业名称。  　　（十六）申报修理修配船舶退（免）税的，应提供在修理修配业务中使用零部件、原材料的贸易方式为“一般贸易”的出口货物报关单。出口货物报关单中“标记唛码及备注”栏注明修理船舶或被修理船舶名称的，以被修理船舶作为出口货物。  　　（十七）为国外（地区）企业的飞机（船舶）提供航线维护（航次维修）的货物劳务，出口企业（维修企业）申报退（免）税时应将国外（地区）企业名称、航班号（船名）填写在《生产企业出口货物免、抵、退税申报明细表》的第22栏“备注”中，并提供以下资料：  　　1.与被维修的国外（地区）企业签订的维修合同；  　　2.出口发票；  　　3.国外（地区）企业的航班机长或外轮船长签字确认的维修单据〔须注明国外（地区）企业名称和航班号（船名）〕。  　　（十八）出口企业或其他单位发生的真实出口货物劳务，由于以下原因造成在规定期限内未收齐单证无法申报出口退（免）税的，应在退（免）税申报期限截止之日前向主管税务机关提出申请，并提供相关举证材料，经主管税务机关审核、逐级上报省级国家税务局批准后，可进行出口退（免）税申报。本项规定从2011年1月1日起执行。2011年1月1日前发生的同样情形的出口货务劳务，出口企业可在2013年6月30日前按照本项规定办理退（免）税申报，逾期的，主管税务机关不再受理此类申报。  　　1.自然灾害、社会突发事件等不可抗力因素；  　　2.出口退（免）税申报凭证被盗、抢，或者因邮寄丢失、误递；  　　3.有关司法、行政机关在办理业务或者检查中，扣押出口退（免）税申报凭证；  　　4.买卖双方因经济纠纷，未能按时取得出口退（免）税申报凭证；  　　5.由于企业办税人员伤亡、突发危重疾病或者擅自离职，未能办理交接手续，导致不能按期提供出口退（免）税申报凭证；  　　6.由于企业向海关提出修改出口货物报关单申请，在退（免）税期限截止之日海关未完成修改，导致不能按期提供出口货物报关单；  　　7.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情形。    三、适用免税政策的出口货物劳务申报  　　（一）《管理办法》第十一条第（七）项中“未在规定的纳税申报期内按规定申报免税”是指出口企业或其他单位未在报关出口之日的次月至次年5月31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填报《免税出口货物劳务明细表》（附件11），提供正式申报电子数据，向主管税务机关办理免税申报手续。  　　（二）出口企业或其他单位在按《管理办法》第九条第（二）项规定办理免税申报手续时，应将以下凭证按《免税出口货物劳务明细表》载明的申报顺序装订成册，留存企业备查：  　　1.出口货物报关单（如无法提供出口退税联的，可提供其他联次代替）；  　　2. 出口发票；  　　3. 委托出口的货物，还应提供受托方主管税务机关出具的代理出口货物证明；  　　4. 属购进货物直接出口的，还应提供相应的合法有效的进货凭证。合法有效的进货凭证包括增值税专用发票、增值税普通发票及其他普通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农产品收购发票、政府非税收入票据；  　　5. 以旅游购物贸易方式报关出口的货物暂不提供上述第2、4项凭证。  　　（三）出口企业或其他单位申报的出口货物免税销售额与出口货物报关单上的离岸价不一致（来料加工出口货物除外）的，应在报送《免税出口货物劳务明细表》的同时报送《出口货物离岸价差异原因说明表》及电子数据。  　　（四）主管税务机关已受理出口企业或其他单位的退（免）税申报，但在免税申报期限之后审核发现按规定不予退（免）税的出口货物，若符合免税条件，企业可在主管税务机关审核不予退（免）税的次月申报免税。  　　（五）出口企业从事来料加工委托加工业务的，应在海关签发来料加工核销结案通知书之日（以结案日期为准）起至次月的增值税纳税申报期内，提供出口货物报关单的非“出口退税专用”联原件或复印件，按照《管理办法》第九条第（四）项第2目第（2）规定办理来料加工出口货物免税核销手续。未按规定办理来料加工出口货物免税核销手续或经主管税务机关审核不予办理免税核销的，应按规定补缴来料加工加工费的增值税。  　　（六）出口企业或其他单位按照《管理办法》第十一条第（八）项规定放弃免税的，应向主管税务机关报送《出口货物劳务放弃免税权声明表》（附件12），办理备案手续。自备案次月起执行征税政策，36个月内不得变更。    四、有关单证证明办理  　　委托出口货物发生退运的，应由委托方向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转交受托方，受托方凭该证明向主管税务机关申请开具《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管理办法》第十条第（三）项与此冲突的内容停止执行。    五、其他补充规定  　　（一）符合《管理办法》第十一条第（三）项规定的集团公司，集团公司总部在申请认定时应提供以下资料：  　　1.《集团公司成员企业认定申请表》（附件13）及电子申报数据；  　　2.集团公司总部及其控股的生产企业的营业执照副本复印件；  　　3.集团公司总部及其控股的生产企业的《出口退（免）税资格认定表》复印件；  　　4.集团公司总部及其控股生产企业的章程复印件；  　　5．主管税务机关要求报送的其他资料。  　　（二）外贸企业在2012年6月30日以前签订的委托加工业务合同，如果在2012年7月1日以后收回加工货物并在2013年6月30日前出口的，按2012年6月30日以前的规定申报出口退（免）税。外贸企业须在2013年4月30日前向主管税务机关提供上述合同进行备案。  　　（三）为适应货物贸易外汇管理制度改革，《管理办法》中涉及到出口收汇核销单的规定不再执行。  　　2012年8月1日后报关出口的货物，以及截至2012年7月31日未到出口收汇核销期限或者已到出口收汇核销期限的但未核销的2012年8月1日前报关出口的货物，出口企业或其他单位在申报出口退（免）税、免税时，不填写《管理办法》附件中涉及出口收汇核销单的报表栏目。  　　（四）经税务机关审核发现的出口退（免）税疑点，出口企业或其他单位应按照主管税务机关的要求接受约谈、提供书面说明情况、报送《生产企业出口业务自查表》（附件14）或《外贸企业出口业务自查表》（附件15）及电子数据。  　　出口货物的供货企业主管税务机关按照规定需要对供货的真实性及纳税情况进行核实的，供货企业应填报《供货企业自查表》（附件16），具备条件的，应按照主管税务机关的要求同时报送电子数据。  　　（五）主管税务机关发现出口企业或其他单位的出口业务有以下情形之一的，该笔出口业务暂不办理出口退（免）税。已办理的，主管税务机关可按照所涉及的退税额对该企业其他已审核通过的应退税款暂缓办理出口退（免）税，无其他应退税款或应退税款小于所涉及退税额的，可由出口企业提供差额部分的担保。待税务机关核实排除相应疑点后，方可办理退（免）税或解除担保。  　　1.因涉嫌骗取出口退税被税务机关稽查部门立案查处未结案；  　　2.因涉嫌出口走私被海关立案查处未结案；  　　3.出口货物报关单、出口发票、海运提单等出口单证的商品名称、数量、金额等内容与进口国家（或地区）的进口报关数据不符；  　　4.涉嫌将低退税率出口货物以高退税率出口货物报关；  　　5.出口货物的供货企业存在涉嫌虚开增值税专用发票等需要对其供货的真实性及纳税情况进行核实的疑点。  　　（六）主管税务机关发现出口企业或其他单位购进出口的货物劳务存在财税〔2012〕39号文件第七条第（一）项第4目、第5目和第7目情形之一的，该批出口货物劳务的出口货物报关单上所载明的其他货物，主管税务机关须排除骗税疑点后，方能办理退（免）税。  　　（七）出口企业或其他单位被列为非正常户的，主管税务机关对该企业暂不办理出口退税。  　　（八）出口企业或其他单位未按规定进行单证备案（因出口货物的成交方式特性，企业没有有关备案单证的情况除外）的出口货物，不得申报退（免）税，适用免税政策。已申报退（免）税的，应用负数申报冲减原申报。  　　（九）出口企业或其他单位出口的货物劳务，主管税务机关如果发现有下列情形之一的，按财税〔2012〕39号文件第七条第（一）项第4目和第5目规定，适用增值税征税政策。查实属于偷骗税的，应按相应的规定处理。  　　1.提供的增值税专用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等进货凭证为虚开或伪造；  　　2.提供的增值税专用发票是在供货企业税务登记被注销或被认定为非正常户之后开具；  　　3.提供的增值税专用发票抵扣联上的内容与供货企业记账联上的内容不符；  　　4.提供的增值税专用发票上载明的货物劳务与供货企业实际销售的货物劳务不符；  　　5.提供的增值税专用发票上的金额与实际购进交易的金额不符；  　　6.提供的增值税专用发票上的货物名称、数量与供货企业的发货单、出库单及相关国内运输单据等凭证上的相关内容不符，数量属合理损溢的除外；  　　7.出口货物报关单上的出口日期早于申报退税匹配的进货凭证上所列货物的发货时间（供货企业发货时间）或生产企业自产货物发货时间；  　　8.出口货物报关单上载明的出口货物与申报退税匹配的进货凭证上载明的货物或生产企业自产货物不符；  　　9.出口货物报关单上的商品名称、数量、重量与出口运输单据载明的不符，数量、重量属合理损溢的除外；  　　10．生产企业出口自产货物的，其生产设备、工具不能生产该种货物；  　　11.供货企业销售的自产货物，其生产设备、工具不能生产该种货物；  　　12.供货企业销售的外购货物，其购进业务为虚假业务；  　　13.供货企业销售的委托加工收回货物，其委托加工业务为虚假业务；  　　14.出口货物的提单或运单等备案单证为伪造、虚假；  　　15.出口货物报关单是通过报关行等单位将他人出口的货物虚构为本企业出口货物的手段取得。  　　（十）以边境小额贸易方式代理外国企业、外国自然人报关出口的货物（国家取消出口退税的货物除外），可按下列规定办理备案手续，办理过备案的上述货物，不进行增值税和消费税的纳税、免税申报。  　　1．边境地区出口企业应在货物出口之前，提供下列资料向主管税务机关办理备案登记手续：  　　（1）企业相关人员签字、盖有单位公章且填写内容齐全的纸质《以边境小额贸易方式代理外国企业、外国自然人报关出口货物备案登记表》（见附件17）及电子数据；  　　（2）代理出口协议原件及复印件。代理出口协议以外文拟定的，需同时提供中文翻译版本。  　　（3）委托方经办人护照或外国边民的边民证原件和复印件。  　　2．边境地区出口企业应在货物报关出口之日（以出口货物报关单上的出口日期为准）次月起至次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提供下列资料向主管税务机关办理代理报关备案核销手续：  　　（1）企业相关人员签字、盖有单位公章且填写内容齐全的纸质《以边境小额贸易方式代理外国企业、外国自然人报关出口货物备案核销表》（见附件18）及电子数据；  　　（2）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联，以人民币结算的为盖有海关验讫章其他联次）。  　　3．边境地区出口企业代理报关出口的货物属国家明确取消出口退（免）税的，按有关规定适用增值税、消费税征税政策。  　　4．边境地区出口企业在2011年1月1日至本公告执行之日代理外国企业、外国自然人报关出口的货物（以出口货物报关单上的出口日期为准），应在2013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内，提供本项第2目所列的资料，向主管税务机关办理代理报关备案核销手续。  　　5．边境地区出口企业未按照本项规定办理代理报关备案登记、备案核销的，主管税务机关可取消其按照代理报关备案管理的资格，并可按《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第六十二条等有关规定处理。  　　（十一）出口企业或其他单位出口财税〔2012〕39号文件第九条第（二）项第6目所列货物的，如果出口货物有两种及两种以上原材料为财税〔2012〕39号文件附件9所列原材料的，按主要原材料适用政策执行。主要原材料是指出口货物材料成本中比例最高的原材料。  　　（十二）输入特殊区域的水电气，区内生产企业用于出租、出让厂房的，不得申报退税，进项税额须转入成本。  　　（十三）出口企业或其他单位可填报《出口企业或其他单位选择出口退税业务提醒信息申请表》（见附件19），向主管税务机关申请免费的出口退税业务提醒服务。已申请出口退税业务提醒服务的，企业负责人、联系电话、邮箱等相关信息发生变化时，应及时向主管税务机关申请变更。  　　出口企业或其他单位应按照国家制发的出口退（免）税相关政策和管理规定办理出口退（免）税业务。主管税务机关提供的出口退税业务提醒服务仅为出口企业和其他单位参考，不作为办理出口退（免）税的依据。  　　（十四）出口企业或其他单位应于每年11月15日至30日，根据本年度实际出口情况及次年计划出口情况，向主管税务机关填报《出口企业预计出口情况报告表》（见附件20）及电子数据。  　　（十五）《管理办法》及本公告中要求同时提供原件和复印件的资料，出口企业或其他单位提供的复印件上应注明“与原件相符”字样，并加盖企业公章。主管税务机关在核对复印件与原件相符后，将原件退回，留存复印件。  　　六、本公告除已明确执行时间的规定外，其他规定自2013年4月1日起执行，《废止文件目录》（见附件22）所列文件条款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  1. 海关出口商品代码、名称、退税率调整对应表  　　2. 出口货物离岸价差异原因说明表　3. 进料加工企业计划分配率备案表　4. 生产企业进料加工业务免抵退税核销申报表  　　5. 进料加工手（账）册实际分配率反馈表  　　6-1.已核销手（账）册海关数据调整报告表（进口报关单）  　　6-2.已核销手（账）册海关数据调整报告表（出口报关单）  　　7. 生产企业进料加工业务免抵退税核销表  　　8. 先退税后核销资格申请表  　　9. 先退税后核销企业免抵退税申报附表  　　10. 免税品经营企业销售货物退税备案表  　　11. 免税出口货物劳务明细表  　　12. 出口货物劳务放弃免税权声明表　13. 集团公司成员企业认定申请表　14. 生产企业出口业务自查表  　　15. 外贸企业出口业务自查表  　　16. 供货企业自查表  　　17. 以边境小额贸易方式代理外国企业、外国自然人报关出口货物备案登记表  　　18. 以边境小额贸易方式代理外国企业、外国自然人报关出口货物备案核销表  　　19. 出口企业或其他单位选择出口退税业务提醒信息申请表  　　20. 出口企业预计出口情况报告表　21. 退（免）税货物、标识对照表　22. 废止文件目录  　　国家税务总局  　　2013年3月13日  附件下载：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254350.files/n12254658.rar> |